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주민의 진료와 질병등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 발전과 주민복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병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병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충주병원의 자본금은 1,717,899,642원으로 하고 도지사가 전액출자한다.

②제1항의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제1항의 출자는 현금이외에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현물출자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의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금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4. 해산에 관한 사항

②병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등기) 병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7조(사업) 병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진료사업
2. 전염병 예방등 공공의 보건의료 사업
3.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4.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5. 주민의 장의편익 증진을 위한 장의사업
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8조(진료의 범위) 병원의 진료제공의 지역범위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임원과 직원

제9조(임원) 병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인
2. 이사 7인내지 11인
3.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임면) ①원장은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임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한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공인회계사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승인하고 원장이 임면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원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경영실적평가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원장은 병원을 대표하며 병원의 업무를 통리한다. 다만,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의 해임건의가 있거나 당해 의료원 이사회의 해임 건의가 있을 경우 도지사는 원장을 면직할 수 있다.

②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직원의 임면) ①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
②의료요원 및 직원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5조(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병원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도지사의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임원 및 대학병원에 겸직하는 의료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사회) ①병원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이사(공기업담당관 또는 보건과장)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하부조직) 병원의 원장밑에는 진료부와 관리부를 둔다. 다만, 전문의의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연구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부에는 부장 각 1인을 두고 그 업무분장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진료부장은 원장이 지정하는 진료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 3 장 재 산 과 회 계

제1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등) ①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병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엔느 병원에 공

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19조(기금 및 보조금등) ①병원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병원의 기본 시설·설비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공공진료에 따른 의업수입등 병원의 정상수입으로 병원의 시설설비와 차관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에 부족이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제20조(지방비의 부담)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병원사업이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진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도 시행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제공하는 진료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진료가격과 실제진료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병원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21조(사업년도) 병원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2조(예산과 결산) ①병원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에 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1월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에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병원의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4월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3조(계리의 원칙) 병원의 계리는 그 사업의 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병원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익금의 보전
2. 사업준비금의 적립
3. 차기 이월금

②병원은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1. 미처분양여금
2. 사업준비금

제 4 장 기 체

제25조(사채의 발생) ①병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국내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채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6조(차관) ①병원은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7조(차입) ①병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병원은 도 회계년도 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진료비 미수금 범위내에서 도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때 차입이자는 지급하지 아

니한다.

제 5 장 감 독

제28조(감독) ①도지사는 병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2(경영평가) ①도지사는 병원이 지방공기업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경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경영평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보고 및 감사) 도지사는 병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3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병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31조(의료수가) 병원이 환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제32조(민법의 준용) 병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조례 제1293호 1983년 7월 1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지방공사 충주의료원은 이 조례 시행일 당시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